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전주)2019누167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312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에게 48,29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각 취득

1) 원고는 2014. 10. 15. 주식회사 B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 공장용지 1,593㎡ 및 지상 건물 3동(이하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0. [redacted]시 [redacted]구 E 전 354㎡ 중 107분의 31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4. 26. 전주시 덕진구 F 전 473㎡(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 등록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1) 원고는 2014. 11. 11. 제1부동산에 상호를 'D', 업종은 '건설기계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2.경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제1부동산에 업종을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241)'으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1. 12. 제1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D'으로 하여 부분(일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16. 11. 8.경 기존 상호인 'D'을 'G'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에 기존 건설기계제조업에 도매업(중기매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을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에 대한 제조업 영위를 이유로 한 취득세 등 면제

1) 원고는 2014. 12. 9.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1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27,163,000원을 면제받았다.

2) 원고는 2016. 1. 20. 제2 부동산을, 2016. 4. 26. 제3 부동산을 각 취득한 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합계 816,000원, 제3 부동산의 취득세 등 합계 3,897,760원도 면제받았다.

라. 피고의 실태조사 후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 추징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2018. 4.경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서비스업인 건설기계정비업(지게차 수리,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48,295,950원(= 제1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27,163,000원 +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816,000원 + 제3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3,897,760원 + 가산세 16,419,1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2018. 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4.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설기계 구조변경(지게차의 엔진교체 등 건설기계의 개량, 개조, 재제조 활동)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1. 1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였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기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따라서 원고가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 11, 14, 15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산업활동은 중기도매업, 지게차 임대업, 지게차 정비업에 해당할 뿐,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을 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경받을 수 있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공장설립을 완료할 당시 시행되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제조업(분류번호 10~33)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수리업(분류번호 95)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각각 의미하고,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행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이 되기 위하여는 기존 건설기계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2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지게차의 타이어·펜더·로테이팅롤클램프·로테이팅포크·마스트·포크포지셔너·사이드쉬프트 등의 부품을 장착하거나 제거하고, 원동기의 형식을 변경하는 등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8. 9. 법률 제14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변경과 관련된 영업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구조변경이 곧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지게차의 구조변경은 대체로 작업장치와 관련된 특정부품을 장착하거나, 작업장치 또는 원동기의 기존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을 장착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정비나 개별 지게차의 사용용도에 따른 부품의 교체 또는 변경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지게차의 본질적 개조나 개량, 재제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2017. 10. 18. 주식회사 H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위 용역은 건설기계에 설치되어 있던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러한 엔진의 단순한 교체를 두고 정비 내지 수리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B은 제1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도장 및 종합수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제1 부동산을 취득하여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으나, 제1 부동산의 외형은 위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15. 1. 14.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원고의 간판에는 왼편에는 'A/S · 매매 · 렌탈'이라는 기재가, 오른편에는 'D'이라는 상호의 표시만 있을 뿐 지게차의 제조는 물론 정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원고는 2016. 1. 20. 및 같은 해 4. 26. 제2, 3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매업(중기매매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7. 4. 17.부터 운영하였다는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업체에 관하여 '각종 지게차 다량보유, 중고지게차 매매, 지게차 렌탈, 지게차 정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메뉴도 '회사 소개, 중고지게차 매매, 지게차 렌탈, 지게차 정비, 고객센터'가 있을 뿐, 지게차의 제조,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장 현황, 홈페이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장에서 행해진 작업들은 지게차의 현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의 수준에 그친다고 보일 뿐, 기존 지게차의 구조변경을 하는 등으로 작업 전후에 걸쳐 지게차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제조활동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하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④ 통계청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공장, 창고, 부두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 각종 화물 운반 또는 취급용으로 사용되는 비도로 주행용 기계식 추진 트럭(포크리프트 트럭, 지게차 등)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기능, 형태, 시스템 등을 구조변경, 개선 및 개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 중 일부가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는 지게차 구조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게차 구조변경이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업이 관련된 비중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2020. 1. 30.자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제조에 해당하는 구조변경 등의 공임이 일반 수리 공임보다 3~4배에 이르러 전체 매출의 78.6%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24, 25호증 '2015년, 2016년 상, 하반기 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세금계산서 목록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의로 수리비 20만 원을 기준으로 구조변경 비용 여부를 판별하는 등 위 각 세금계산서 목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구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일환 55141-113(2000. 2. 29.)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기준(갑 제4호증)"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건설기계·용품의 재생 및 개량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정비업 중 건설기계 및 그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업(원동기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유압)은 전문수리업으로 보아 공장설립 및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건설기계정비업 중 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을 업으로 하는 이상, 원고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기준은 공장설립 등록업무의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리업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업무처리기준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과 수리업의 구별에 관하여 기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예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분건설기계정비업'으로 등록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사업이 제조업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가 영위한 구조변경 영업이 곧바로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7.2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3.변속기	가. 탈부착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5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비고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끝.